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79
------------	-----

2018년 12월 19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17일, 정진철 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교통위원회(2018년 1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진철 의원)

가.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고, 현재 각종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 및 개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물 없

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반영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이 노력하도록 함(안 제24조)

3. 참고사항(관련법령)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8.11.1.~11.8.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보행정책과) : 원안동의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등에 관련 법에서 정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에¹⁾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구역·도시를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이를 증명하는 과정을 말함²⁾
-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이³⁾ 인증 대상 시설, 지역, 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제2조제1호 및 제7호(2015.8.3.일 폐지)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인증 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인증대상지역)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비롯한 일반 시설을 이용할 때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임

- 또한, 서울시가 1역사 1동선 지하철 역사 확충, 저상버스 도입 및 무장애 버스정류소 설치사업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 사업들에 대한 인증절차를 통해 지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는 등 과학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다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답변 : 우리시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대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 정비를 지속 추진 중에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7일

발 의 자 : 정진철 의원(1명)

찬 성 자 : 이은주, 이승미, 추승우, 성중기,
정지권, 송도호, 경만선, 김태호,
송아량, 오중석, 우형찬 의원(11명)

1. 제안이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고, 현재 각종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 및 개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반영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이 노력하도록 함.(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24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u> <u>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u> <u>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u> <u>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법</u> <u>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u> <u>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u> <u>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제24조</u> · <u>제25조</u> (생 략)</p>	<p><u>제25조</u> · <u>제26조</u> (현행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음)</p>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서울시장의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됨에 따라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곤란

※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사업 수행

- 홈페이지 주소(<https://bf.koddi.or.kr>)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박종철

☎ 02-3705-1281

e-mail : pjc99@seoul.go.kr